

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
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김지연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4. 8. 26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382호로 2024년 8월 12일 김지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,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

(안 제1조~제3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
(안 제6조~제7조)

라. 시책 개발 및 지원,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

(안 제9조~제10조)

마.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근로기준법」, 「근로복지기본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(2024. 8. 6. ~ 8. 11.)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제고함으로써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영등포구를 구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총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정의)에서 “노동”을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1)에 따른 “근로”로 정의하고, “노동자”를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“근로자”를 포함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여 포괄적 권리보장을 담보하고자 함.
- 안 제6조(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) 및 제7조(연도별 시행계획)에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“노동기본계획”을 수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,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
- 안 제8조(점검 및 평가)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한 후 각 계획에 대해 환류시키는 절차를 마련함.
- 안 제9조(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)부터 ~

1)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근로자”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

안 제12조(법률 지원 등)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과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가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도록 발의된 안건으로, 노동 권익 보장에 앞장서는 영등포를 만들고자 하는 선언적, 권고적 형태의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보임.
- 최근 범사회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,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못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²⁾가 존재하게 되어 근로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.
- 이를 반영하여, 본 조례안에서는 “노동자”를 근로관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해 노동자성³⁾과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범위를 확장함.
-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▲노동기본계획 수립 ▲ 노동자 권리보호·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⁴⁾

2) 필수노동자, 플랫폼 종사자(플랫폼 노동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아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), 특수형태근로종사자(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), 프리랜서 등

3) 노동자성: 신분, 계약형식, 근로형태, 상용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취업하여 인적·경제적 종속적인 노동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상태

에 따르면 “주민복지에 관한 사업”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되어 있기에 해당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조례 입법은 가능하다고 하겠음.

- 한편, 우리 구(區)에서는 「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, 「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」, 「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」, 「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」가 있으나 각각의 조례는 “감정노동 종사자”, “공동주택 관리 노동자”, “플랫폼 노동자”, “프리랜서” 같이 직업군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“노동자”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조례는 없기에 본 조례 제정⁵⁾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
4)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5) 「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」 서울시 자치구 현황: 강서구, 성북구

참 고 자 료

1 근로기준법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근로자”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

2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